소통과 신뢰로 하나되는 창원특례시의회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27.)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7.(화)
기 획 행 정 위 원 회

1. 심사 경과

가. 제 출 일: 2026. 10. 16.

나. 제 출 자: 창원시장

다. 회부일자: 2026. 10. 20. (의안번호 제97호)

라. 상정 및 의결: 제1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27.)

2. 제안설명 요지 (김종필 기획조정실장)

주요 시책 및 현안 등에 대하여 각 분야 외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자문을 위하여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위원회는 시정의 비전, 주요 시책, 정책과제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1)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구성

2) 대학이나 연구기관 교수, 연구원 또는 정책 분야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함.(안 제7조)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등 (안건책자 참조)

5.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 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 본 제정조례안은 창원시 주요 시책 및 현안 등에 대하여 각 분야 외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자문을 받기 위해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안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정 비전·목표 및 발전 방향, 주요 시책과 현안의 추진 방향, 전문 분야별 정책 과제 등 시정 전반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

○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학·연구기관의 교수 및 연구원, 정책 분야별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정함. 또한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함.

○ **【안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함.

○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및 제6조(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와 직무대행, 회의 소집 및 의결 요건 등 위원회의 운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8조(간사)】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담당부서의 장을 간사로 정함.

○ 【안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함.

○ 【안 제10조(운영세칙)】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시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특히 시정 비전과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별 정책과제까지 자문 대상으로 포함하여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어 입법 체계상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행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 도 시정의 기본계획 및 시책과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연구, 심의·의결하고 있어 기능상 유사성이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는 본청 실·국장 등 당연직 위원 12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행정 내부의 의사결정 및 부서 간 업무 조정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음. 필요시 7명 이내의 위촉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사례가 없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반면, 본 조례안에 따른 시정자문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외부자문기구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구분	(신설) **시정자문위원회**	(기존)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 교수, **정책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80명 이내)** - 필요시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 지명	- **본청 실국장 중심 당연직 위원 (현재 12명)** - 필요시 위촉위원 구성(7명 이내, 사례 無)
기능	**창원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를 둔다. 1. 시정 비전·목표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책 및 현안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3. 전문 분야별 정책 과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경상남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시정자문위원회는 기획조정, 경제산업, 정주행복, 안전건설 등 4개 분과로 구성하며, 분과별 20명 내외, 총 80명 규모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임. 위원회는 전체회의와 분과별 현안 자문을 병행하고 긴급하거나 단순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임.

○ 또한 분과별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 구상 및 수립 단계에서부터 자문을 통한 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 시 사업 현장 방문과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수렴하고자 함. 아울러 자문의견의 정책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자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시정자문위원회 개요**

ㅇ 구　　성 : **4개 분과 / 80명 민간전문가** (분과별 20명 내외 :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 협회 등)

┌ (분과) **①기획조정분과 ②경제산업분과 ③정주행복분과 ④안전건설분과**

└ (운영) 사안별 적합한 전문가 지정 · 논의, 쟁점별 대안 · 전문가 자문 등 결론도출

ㅇ 방　　식 : **전체회의**(1~2회), **현안자문**(특정사안, 분과별), **서면·온라인**(긴급, 단순검토)

□ **운영계획**

'시정 핵심의제 중심 + 정책방향·대안·실행방안 중점' 자문체계 운영

기　능	주요 내용
전문적·탄력적 자문	○ 분야별 관련 전문가 중심 회의(Pin-Point 자문)
사전검토	○ 정책 구상·수립 단계 자문을 통한 사전검토 기능 강화
현장 밀착형	○ 사업 현장 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 등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정책반영 관리	○ 자문의견 정책 반영 여부 정기 점검을 통한 자문 실효성 확보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민간전문가의 전문성과 현장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신뢰도와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원회는 시정의 정책방향을 일방적으로 뒷받침하거나 특정 의견을 유도하는 기구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자문기구로 운영되어야 함.

따라서 위원 구성 시 특정 분야·기관·이해관계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문성, 대표성, 독립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 찬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객관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만큼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자문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척·회피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6. **질의 · 답변 요지**: 기재 생략

7. **토론 요지**: 기재 생략

8. 심사 결과: **원안 가결**

- 무기명 표결: 재적 5명, 찬성 5명, 반대 3명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건의 사항, 촉구사항 등): 없음